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종도·박성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5층 전화: 723-6300 / 팩스: 723-6066
 친화안 호텔 PSPD, 뉴누리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 李泰鎬 기획부장, 林美玉 간사, 申庭娥 간사: 723-4254)
 제 목 참여연대 OB맥주社와 서울시 고발 ; OB맥주 영등포공장부지 매매 관련
 날 짜 1998. 5. 6. (총 17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OB맥주 서울시 고발

OB맥주 영등포공장부지 매매관련 ;

공문서 위조-조세포탈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

.....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崔銀純 변호사)은 1998년 5월 7일 오전 10시, OB 맥주 영등포공장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OB맥주社와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각각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조세포탈죄,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위조죄로 서초동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발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 申庭娥, 참여연대 기획부장 李泰鎬,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金炯完).

2. 이 날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OB맥주社는 영등포공장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당시 아직 도시계획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토지계약에 대해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124억원을 감면받기 위해 서울시장명의로의 공문서인 '세액감면신청서'를 위조하여 결국 124억원의 조세를 포탈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사실상 법적으로 사(私)경제 매매에 불과한 공장부지매수를,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매수로 확인하는 '토지수용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3. 참여연대는 고발장접수에 앞서 당일 오전 9:30에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고발인들의 고발취지설명을 가질 예정이다. 끝.

※ 별첨: 고발장 사본

5월 7일 ~ 8일에 보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발 장

고발인 : 1. 김형완(金炯完)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연락처 : 723-530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민
주사회시민연대

2. 이태호(李泰鎬)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연락처 ; 723-4254

주소 : 위와 같은 곳

3. 신정아(申庭娥)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연락처 ; 723-5300

주소 : 위와 같은 곳

피고발인 : 1. OB맥주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유 병 택(柳秉宅)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3

2. OB맥주 주식회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

주소 : 위와 같은 곳

3. OB맥주 주식회사

주소 : 위와 같은 곳

4. 서울시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

위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 OB맥주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회

장 유병택, 같은 OB맥주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조세포탈죄로, 같은 OB맥주 주식회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조세포탈죄로, 같은 서울시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를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 발 사 실

1. 사실관계

(1) 서울시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하나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의 3에 있는 OB맥주 공장부지 약 1만9천5백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1996. 12. 28. OB맥주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약 1,139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6조의2에 의한 영등포구청장의 도시계획(안) 공람만이 완료되었을 뿐 같은법 제12조의 도시계획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9조의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OB맥주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서울시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1)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1)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40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20

- (3)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 함) 제63조에서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OB맥주 주식회사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매매계약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95.12.29, 97.4.10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서울시는 OB맥주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공원)에 사용코자 매입하기로 한 경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토지 등의 매입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하 공특별법이라 함)에 의한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매입인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토정 58342-27, 97. 1. 10.)하였습니다.

2.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1)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의 토지 등의 취득은 공
특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OB맥주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소유
권이전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6조의2에 의
한 영등포구청장의 '도시계획(안) 공람'만이 완료되었는데도, 실제 상
황과 다르게 '도시계획결정(같은법 제12조) 및 사업인정(실시계획) 공
람공고(같은법 제25조의2)'까지 완료된 것으로 하여 국세청에 공공사
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를 질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법인46012-61, 97. 1. 9)받아 서울시에 제시하였고 서울시는 이
를 근거로 하여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특별부가세 감면용으
로 OB맥주 주식회사 측에 발급하였습니다.
-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OB맥주 주식회사 간의 매
매계약만이 있을 뿐이고 서울시는 어떠한 토지수용절차나 협의매수
절차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OB맥주 주식회사에서 특별부가세를 감
면받고자 서울시에 확인서를 요구하였을 때 조감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
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같은법 제6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의한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토지수용(협
의매수)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이 점의 불법, 부당성에 대하
여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가 발표한 '1996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견서'에서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3) 서울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이나 협의매수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OB맥주 주식회사에게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의 토지 등의 취득은 공특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이 있었고,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의 입장은 공특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을 배제(재산 01254-684, 86. 2. 27.)하며 또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사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재산 1263-3939, 84. 12. 10)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당시에는 도시계획(안) 공람만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어려운데, 같은항 제3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 위장하여 OB맥주 주식회사로 하여금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4) 그렇다면, 위와 같은 당시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명백하게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토지거래에 관하여, 서울시가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인 평당 470만 7천원보다 훨씬 높은 평당 536만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와 OB맥주 주식회사 간의 유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실사, 양자 사이의 유착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이나 협의매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은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3. OB맥주 주식회사 측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1) 조세감면규제법 통칙2-12-18 . . . 41(이전계획서, 세액면제신청서 등의 제출 및 감면신청의 효력)에 의하면 조감법 제57조 제4항(개정후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또는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적법한 감면신청 자체를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 명의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조감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 서식 세액감면신청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작성하여 그 명의로 신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에 불과한 OB맥주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문서수발대장에 등재되어 공식적으로 작성된 세액감면신청서가 아닌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특별부가세 약 120억원을 감면신청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가 발표한 '199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OB맥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 담당직원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 되고, 이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4. OB맥주 주식회사 측의 조세포탈의 점

(1)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당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와 OB맥주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에 의하여 거래된 것이고, 토지수용절차나 협의매수절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B맥주 주식회사는 서울시로부터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받고, 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영등포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결국 OB맥주 주식회사는 공특법에 의하여 약 120억원 상당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2) 그렇다면, OB맥주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과 그 담당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공제받은 것'으로써 기수에 이르렀고 포탈세액이 무려 120여억원에 이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OB맥주 주식회사 측의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관할 영등포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묵인의혹

(1)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거래는 토지수용절차나 협의매수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OB맥주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OB맥주 주식회사가 조감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세액감면신청서(을)과 ②서울시가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그런데, 관할 영등포 세무서에는 '서울시가 공공사업시행자라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전혀 다른 서류인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가 첨부, 제출되었음에도, 영등포 세무서는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OB맥주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또한, OB맥주 주식회사가 감면신청을 구하는 특별부가세액이 무려 120여억원에 이르는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세무서는 세액감면신청서(을)가 서울시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중에라도 세액감면신청서가 서울시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OB맥주로부터 부당하게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관할 영등포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OB맥주 주식회사측의 범법행위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눈감아 주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관할 영등포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OB맥주 주식회사 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결 어

위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와 OB맥주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건설교통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엄청난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공원조성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까지 매수함으로써 결국 OB맥주 주식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두산그룹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영등포구청에 승인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1996. 10.경부터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그룹에서는 처리비용을 걱정하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사건 토지 외에 공원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토지상의 건물까지 87억여원에 매수하여 서울시가 두산그룹의 걱정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25억여원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상 밝힌 것과 같이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피고발인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작성 '199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중 관련 부분.

1. 세액감면신청서(을) 양식

1998. 5. 7.

고발인 김형완 (인)

고발인 이태호 (인)

고발인 신정아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